

**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의안 번호	관련 제673호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14. 6. 11.(수)
제안자: 최미애 의원 외

□ 수정이유

- “센터”라는 동일 명칭의 중복 사용 및 기관장 명칭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도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, 통합기구의 명칭과 하부 센터 기관장의 명칭을 수정함.

□ 수정 주요내용

-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6조의2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, 부칙 중 ‘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’를 ‘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’으로 수정하고,
- 안 제5조, 제6조, 제6조의2, 제7조, 제8조, 제11조의 ‘센터소장’을 ‘센터장’으로 수정하며,
- 안 제6조의2에서 ‘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’를 ‘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’로 수정함.

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“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조례”를 “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안 제1조 중 “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”를 “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”으로 한다.

안 제2조 중 “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종합센터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(이하“진흥원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안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6조의2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 중 “종합센터”는 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, 제6조, 제6조의2, 제7조, 제8조, 제11조 중 “센터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의2 중 “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 중 “「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」”를 “「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」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(제명) <u>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조례</u>	(제명) (현행과 같음)	(제명) <u>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·운영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46조와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29조와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7조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라 <u>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</u> -----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</u> -----.
제2조(적용범위) 센터의 운영은 「청소년기본법」과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2조(적용범위) <u>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</u> (이하 “종합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과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등”이라 한다)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2조(적용범위) <u>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</u> 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명칭과 소재지) <u>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</u>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 관할 지역 내에 둔다.	제3조(명칭과 소재지) <u>종합센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제3조(명칭과 소재지) <u>진흥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4조(기능) <u>종합센터</u>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4조(기능) <u>진흥원</u> ----- ----- -----.

제5조(조직) ① <u>센터에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과 복지상담실, 활동진흥실을 둔다.</u> ② <u>센터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에 팀을 설치하며, 팀별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</u> <u><신 설></u>	제5조(조직) ① <u>종합센터에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활동진흥센터,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둔다.</u> ② <u>종합센터 운영을 위하여 원장, 센터소장과 센터 내 팀을 설치하며, 팀별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</u> ③ <u>종합센터에는 청소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.</u>	제5조(조직) ① <u>진흥원에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원장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<u>진흥원 -----</u> -----<u>센터장과</u> ----- ----- -----. ③ <u>진흥원 -----</u> ----- -----.
제6조(원장의 임무) 원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 1. <u>센터 업무총괄과 유관기관 연계 협력</u> 2. <u>인사와 복무관리</u> 3. <u>예산·회계관리의 집행과 결산</u> 4. <u>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, 도난방지</u> 5. <u>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</u> <u><신 설></u>	제6조(원장 등의 직무) ① 원장은 <u>종합센터</u>를 대표하며, 도지사의 명을 받아 <u>종합센터</u>의 직무를 총괄하고, <u>센터소장</u>과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② <u>센터소장</u>은 원장을 보좌하며, 「<u>청소년복지 지원법</u>」 등에서 정한 사무의 수행과 <u>센터</u>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.	제6조(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-<u>진흥원</u>----- ----- -----<u>진흥원</u>--- -----<u>센터장</u> ----- -----. ② <u>센터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제6조의2(운영위원회)	제6조의2(운영위원회) ①

	① <u>종합센터</u> <u>운영의</u> <u>자문역할을</u> <u>수행하기</u> <u>위하여</u> <u>충청북도청소년</u> <u>종합지원센터</u> <u>운영위</u> <u>원회</u>(이하 “<u>운영위원</u> <u>회</u>” 라 한다)를 둔다. ② <u>운영위원회</u>는 <u>위원</u> <u>장과</u> <u>부위원장을</u> <u>포함</u> <u>하여</u> <u>10명</u> <u>이내의</u> <u>위</u> <u>원으로</u> <u>하되</u>, <u>당연직</u> <u>과</u> <u>위촉직</u> <u>위원으로</u> <u>구성한다</u>. ③ <u>위원장은</u> <u>행정부지</u> <u>사로</u> <u>하며</u>, <u>당연직</u> <u>위</u> <u>원은</u> <u>행정부지사</u>, <u>여</u> <u>성</u> <u>정</u> <u>책</u> <u>관</u>, <u>원</u> <u>장</u> <u>으로</u> <u>한다</u>. ④ <u>위촉직</u> <u>위원</u>은 <u>각</u> <u>호의</u> <u>어느</u> <u>하나에</u> <u>해</u> <u>당하는</u> <u>사람</u> <u>중에서</u> <u>원장</u> <u>추천으로</u> <u>도지사</u> <u>가</u> <u>위촉하되</u>, <u>운영위원</u> <u>회의</u> <u>여성</u> <u>위원</u> <u>비율</u> <u>은</u> <u>30%</u> <u>이상이</u> <u>되도록</u> <u>노력하여야</u> <u>한다</u>. 1. <u>청소년분야에</u> <u>학식</u> <u>과</u> <u>경험이</u> <u>풍부한</u> <u>전</u> <u>문가</u> 2. <u>청소년</u> <u>시설</u> · <u>단체</u> <u>·</u> <u>기관의</u> <u>장</u> <u>및</u> <u>지역</u> <u>저명인사</u> ⑤ <u>위촉직</u> <u>위원의</u> <u>임</u> <u>기는</u> <u>2년으로</u> <u>하되</u>, <u>2회에</u> <u>한하여</u> <u>연임할</u> <u>수</u> <u>있다</u>. <u>다만</u>, <u>보궐</u> <u>위원의</u> <u>임기는</u> <u>전임</u> <u>자의</u> <u>잔임</u> <u>기간으로</u> <u>한다</u>. ⑥ <u>운영위원회</u>는 <u>다음</u> <u>각</u> <u>호의</u> <u>사항에</u> <u>대한</u> <u>자문과</u> <u>의결</u> <u>기능을</u>	<u>진</u><u>홍</u><u>원</u>----- ----- ----<u>충청북도청소년중</u> <u>합진홍원</u> <u>운영위원회</u> ----- -----. ②~⑤(개정안과 같음) ⑥----- ----- -----
--	---	--

	수행한다. 1. <u>종합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</u> 2. <u>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자문</u> 3. <u>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</u> 4. <u>종합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운영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</u> 5. <u>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⑦ <u>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 1. <u>위원이나 위원 소속한 기관·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</u> 2. <u>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</u> 3. <u>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⑧ <u>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 ⑨ <u>운영위원회의 사</u>	-----. 1. <u>진홍원</u>----- ----- ----- 2.~3. (개정안과 같음) 4. <u>진홍원</u>----- ----- ----- 5. (개정안과 같음) ⑦~⑧ (개정안과 같음) ⑨-----
--	---	---

	<u>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<u>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이 된다.</u></u>	----- -----<u>청</u> <u>소년상담복지센터장</u> 된다.
제7조(직원과 정원) 직원은 <u>원장, 실장, 팀장, 팀원, 행정원</u>으로 구분하고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7조(직원과 정원) ----- - <u>원장, 센터소장, 팀장, 팀원</u>----- ----- -----.	제7조(직원과 정원) ----- ----- <u>센터장,</u> ----- ----- ----- --.
제8조(임용) ①원장은 <u>청소년 건전육성과 상담·지도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</u> 중에서 <u>도지사가 임용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 ② <u>실장이하 직원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한다.</u>	제8조(임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연</u> <u>임할 수 있으며, 비상근으로 한다.</u> ② <u>센터소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성문화사업 수행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</u> 중에서 <u>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용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	제8조(임용) ①(개정안과 같음) ② <u>센터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1조(직무대행과 팀장의 겸직) ① <u>센터의 원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지상담실장, 활동진흥실장 순으로 대행한다.</u> ② <u>복지상담실, 활동진흥실의 실장은 소속 팀</u>	제11조(직무대행) <u>원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<u>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, 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, 청소년성문화센터소장</u> 순으로 대행한다.</u> <삭 제>	제11조(직무대행) ----- ----- ----- -----<u>청</u> <u>소년상담복지센터장,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, 청소년성문화센터장</u>----- -----.

장을 겸직할 수 있다.		
제13조(보수) 센터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보수지급 기준 :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청 소년상담지원센터와 지방청 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상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다.	제13조(보수) <u>종합센터</u>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활동진흥센터, 청소년성문화센터 ----- -----. 다만, 비상근 원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3조(보수) <u>진흥원</u> ----- ----- ----- 1.~2. (개정안과 같음)
제14조(지도·감독)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과 예산·회계, 비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	제14조(지도·감독) --- --- <u>종합센터</u> ----- ----- <u>종합센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제14조(지도·감독) ---- --- <u>진흥원</u> ----- ----- <u>진흥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5조(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보호) 센터의 직원은 상담이나 보호를 요청한 자로부터 취득한 제반 상담내용과 보호요청에 대하여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과 보호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, 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.	제15조(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보호) <u>종합센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15조(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보호) <u>진흥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6조(재정수입) 센터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	제16조(재정수입) <u>종합센터</u> -----	제16조(재정수입) <u>진흥원</u> -----

치단체의 보조금 수입 으로 충당한다.	----- -----.	----- -----.
제17조(회계년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 계연도에 따른다.	제17조(회계년도) 종합 센터----- -----.	제17조(회계년도) 진흥원 ----- -----.
제19조(예산과 결산 등) ① 센터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② 센터는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 도 2월말까지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 설>	제19조(예산과 결산 등) ① 종합센터 ----- ----- 해당 연도의 여성가족 부 지침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----- -----. ② 종합센터 ----- ----- -----해당 연도의 여 성가족부 지침에서 정 하는 기한까지 ---. ③ 센터의 예산은 명 확히 구분하여 편성 및 집행한다.	제19조(예산과 결산 등) ① 진흥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진흥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개정안과 같음)
	부칙 제2조(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) 종전 조례에 의 하여 임용된 원장 등 「충청북도청소년종합 지원센터」내의 직 원의 임명에 관한 사 항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.	부칙 제2조(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)----- ----- 「충청북도청소년종합 진흥원」----- ----- -----.